

수 신 : 대한변호사협회 전후 책임 위원장

발 신 :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

제 목 : 회의 소집 요청

1. 발신인들은 1995. 3. 11. 일본 동경에서 열린 "ICJ 종군위안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포지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는바,

2. 본인들은 그 현황 보고 및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전후책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이 UN의 인권위원회, 인권소위특별보고관들의 보고 내용과 활동이 중요하므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첨부서류 : 1. 위 심포지움 참석보고서
2. 회의에서 검토하여야할 사항
3.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
4. 노총의 ILO 진정서 및 관련 조문

일본 동경에서 열린 “ICJ 종군위안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포지움” 참석 보고서

1. 주최 :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2. 일시 : 1995. 3. 11. 14:00 - 17:30
3. 장소 : 일본 동경 전수대학
4. 명칭 : ICJ 종군위안부 보고서를 검토하는 심포지움
5. 배경 :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이하 ICJ)가 1994. 11. 22.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 발표하였으나 일본정부는 ICJ 보고서에 냉담.

위 보고서의 일본어 번역판의 출판을 계기로 위 보고서 작성자들을 초청하여 위 보고서에 관한 심포지움을 일본에서 개최함으로써 일본정부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모임이었음.

6. 참석자 :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 이주완 노총 사무총장

Ustinia Dolgopol(보고서 작성자 2명중 1명)

일본의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회원등

7. 주요내용 :

작성자 Ustinia Dolgopol의 보고 및 이에 관련한 토론

일본측에서 국제법전문가 아베교수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위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

이주완 노총사무총장 : 한국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정부를 강

제노동조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

- 종군위안부의 경우가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그 동안 민사소송(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패소할 전망이다), 국제중재 재판 제소(일본정부는 이에 대하여 중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ICJ의 권고, 정대협을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들의 압력등이 일본정부의 무시 및 의도적인 회피로 인하여 별 효과로 못 본 상태에서 노총이 일본정부를 강제노동조약위반으로 ILO에 제소할 경우 일단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이 ILO 제소문제로 옮겨짐.
 - 돌고돌씨는 '종군위안부'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표명함.
- * 이날 심포지움에 앞서 10:00 -13:00까지 한국의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와 일본의 아이따니 쿠니오, 이소미 스즈끼 변호사등은 위 보고서 작성자 돌고돌과 함께 별도로 위 ICJ 보고서의 내용 및 전후보상법 시안 내용에 관한 토론이 있었음.

위 법안은 일본의 '전후보상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연락협의회' 내의 '전후보상입법을 준비하는 변호사회'에서 작성하여 1995.3.2. 발표한 것으로, 명칭은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임.

위 시안의 문제점으로,

-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용어를 보상으로 할 것인가 배상으로 할 것인가(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 보상 금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등이 논의됨.

8. 향후 준비하여야 할 사항

가.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에 대한 한국측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출하여야함.

나. ILO 제소 문제 검토.

다. 금년 4,5월경 방문(일본, 한국, 북한) 예정인 UN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와라 스와미씨에게 제출할 대한 변협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 준비등.

1995. 3.

변호사 배금자

장완익

회의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

1. 외국인전후보상법(시안)검토

가. 작성 경위 : 보고서 참조

나. 주요 내용 :

- 정신대문제, 강제징용문제, 피폭자 문제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게 함.
- 기금은 일본정부와 민간이 출연할 수 있음.
- 피해자들을 각국별로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보상기금 지급.

다. 일본의 법률가 및 민간단체의 평 :

- 일본에서 정신대 문제등 전후배상 문제와 관련한 20개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이 시안의 기본취지에 찬성.
- 보상은 국가의 적법행위에 대한 손해전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뜻하므로 '배상'으로 하자.
- 일본정부가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부탁하는 조항을 넣자.
- 사죄는 희생자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 군관련 보상문제는 정부가, 강제징용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이므로 행위유형에 따른 기금모금 방안이 있어야 한다.
- 엔화로 지급할지 각국 현지통화로 지급할지 불분명하다.
- 제2차 세계대전중이라고 하여 시간적으로 너무 한정하였다.

라. 문제점

(1) 피해자 확정 문제

- 시안 작성자의 案

첫째 : 유형별 조사를 할 때 확인된 피해자

둘째 : 지급금 청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 필요

- 유형별 조사 및 별도의 조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 본부 기금, 외국지부기금, 제3의 단체

-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구제 절차

(2) 보상인가 배상인가

- 시안 작성자의 입장

정신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특히 피폭자)가 존재하므로 배상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넓게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상과 배상의 의의가 한국과는 달라서 보상이라는 말 속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포함된다.

(3) 지급금 산정기준

- 시안 작성자의 입장

각국별로 피해 양태를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개별적인 손해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음.

- 지급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안됨

(4)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의 성격

- 시안 작성자의 입장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반관, 반민 성격의 법인으로 하였다.

2.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문제

가. 한국노총은 1995. 3. 20. ILO에 종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조약 위반으로 진정함(진정서 및 관련 조약 별첨).

- ILO 조약 제29호인 강제노동금지 조약은 1930년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1932년 비준함.
- 노총은 ILO헌장 제24조에 의거 ILO에 진정한 것이며 동 헌장 제 26조에 의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님 : 노총의 견해는 이의제기는 정부만이 할 수 있어서(예외적으로 ILO조약 제87호 및 제98호는 노동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이의 제기 할 수 있음) 진정하였다고함.
- 또한 노총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다음의 ILO 이사회가 9월경에나 열린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진정한 것임.

나.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인가.

- 강제노동의 의미 : 위 조약 제2조 제1항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며 또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모든 노무"
- 종군위안부의 경우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총의 견해)
1994.1. ILO 전문가 위원회의 조약 해석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는 위 조약 제2조에 정의된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에 포함된다고 함.

위와 같은 해석은 성년의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종군위안부에게 위 조약이 적용된다.

다. 처벌 문제

- 위 조약 제25조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의무가 회원국에 있음을 규정.

3.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와라 스와미(스리랑카인)가 올 4,5.월경 남,북한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

- 특별보고관은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기때문에 정부측 입장을 듣고 돌아갈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면담 일정을 마련하여 대한 변협의 의견을 제출할 필요성 있음.(정대협과 협조)

4.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에 대한 대응책

- 일본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모금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모금의 주체를 일본 적십자사로 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적십자사가 이를 거부한 상태임.
- 한국의 피해자들은 위 일본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동요하고 있음.

外國人戰後補償法(試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외국인전후보상기금의 목적)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은 .일본국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중에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위 반행위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 보상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의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필요한 재정조치)

정부는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성 7년도부터 될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의 설립

제4조(법인격)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한다.

제5조(사무소)

제1항 기금은 주된 사무소(이하 '본부기금'이라 한다)를 동경에 둔다.

제2항 기금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필요하면 외국에 종된 사무소(이하 '외국지부기금'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자본금)

기금의 자본금은 다음에 언급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1) 기금을 설립할 때에 정부가 출자하는 금액

(2) 기금은 필요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그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3)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에는 예산에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출자한다.

(4) 제16조 제2호에 따라서 외국지부기금에 대하여 출자한 자본금.

제7조(지분의 양도등)

출자자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등기)

제1항 기금은 정령(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이것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조(명칭의 사용제한)

기금이 아닌 자는 외국인전후보상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

제10조(민법의 준용)

민법(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50조(법인의 주소), 동 제52조 내지 제59조(법인의 이사 및 감사) 및 동 제 68조 내지 제83조(법인의 해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인전후보상지급금

제11조(기금자본금의 출자)

제1항 기금은 자본금을 전후보상지급금의 금액 및 그 지급사무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2항 외국지부기금의 자본금은 당해 외국에 있어서의 전후보상지급금의 금액 및 그 지급사무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12조(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등 및 외국인전후보상지급금의 의의)

제1항 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등이란 비인도적 국제법위반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금에서 전후보상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기금이 각국별로 유형적으로 지정하는 제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 정부의 행위를 말한다.

제2항 전후보상지급금이란 별도의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등의 각 유형에 따라 당해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외에 기금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기금이 정하는 지급금액을 말한다.

제3항 기금은 비인도적 국제법위반행위등의 지정 또는 이에 대응한 지급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본정부의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성 및 구제의 긴급성 및 실제의 지급 절차에 있어서의 난이등을 감안하여 지정행위의 유형을 순차,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전후보상지급금을 받을 권리의 제정)

제1항 전후보상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제정은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이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정의 권한은 청구를 하는 자의 국적국의 외국지부기금에 이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후보상지급금의 지급절차)

제1항 전후보상지급금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국적국의 외국지부기금이 정한 청구서에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국지부기금은 당해국에 소재하는 비정부계기관을 통하여 전후보상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외국지부기금은 전항의 비정부계기관과 전후보상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4장 외국지부기금

제15조(외국지부기금)

기금이 외국지부기금을 두는 경우 당해 외국지부기금은 당해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외국지부기금자본금)

외국지부기금은 각기 독립된 회계단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자본금은 다음에 말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 (1) 당해 외국지부기금을 설립할 때에 본부기금이 출자하는 금액.
- (2) 당해 외국지부기금에 대하여 본부기금 이외의 사람이 출자하는 금액.
- (3) 본부기금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외국지부기금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본부기금을 추가출자한다.

제17조(본부기금이외의 출자자공표)

외국지부기금은 본부기금이외의 출자자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는 출자자의 이름, 명칭을 당해국에 있어서 공표하여 주지되도록 힘쓴다.

제18조(외국지부기금지부의 운영)

제1항 외국지부기금은 지부장 및 운영심의회를 둔다.

제2항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한다.

제3항 외국지부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당해국 비정부계기관의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 기관이 지명한 자에게 운영심의회 심의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외국기금지부의 법인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외국법을 또는 외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지부기금을 당해국의 국내법에 준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심의회

제20조(운영심의회)

제1항 기금은 운영심의회를 둔다.

제2항 운영심의회는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항 운영심의회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4항 운영심의회는 위원 이내로 조직한다.

제21조(위원)

제1항 위원은 기금의 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적절하게 필요한 학식경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얻어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6장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문제

가. 한국노총은 1995. 3. 20. ILO에 종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조약 위반으로 진정함(진정서 및 관련 조약 별첨).

- ILO 조약 제29호인 강제노동금지 조약은 1930년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1932년 비준함.
- 노총은 ILO헌장 제24조에 의거 ILO에 진정한 것이며 동 헌장 제 26조에 의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님 : 노총의 견해는 이의제기는 정부만이 할 수 있어서(예외적으로 ILO조약 제87호 및 제98호는 노동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이의 제기 할 수 있음) 진정하였다고함.
- 또한 노총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지만 다음의 ILO 이사회가 9월경에나 열린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진정한 것임.

나.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인가.

- 강제노동의 의미 : 위 조약 제2조 제1항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며 또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모든 노동"
- 종군위안부의 경우가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총의 견해)
1994.1. ILO 전문가 위원회의 조약 해석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는 위 조약 제2조에 정의된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에 포함된다고 함.

위와 같은 해석은 성년의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종군위안부에게 위 조약이 적용된다.

다. 처벌 문제

- 위 조약 제25조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의무가 회원국에 있음을 규정.

관련 조문

IL0헌장 제24조 : 어느 회원국이 관할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조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어느 면에서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산업단체가 국제노동사무국에 진정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 진정을 진정의 대상이 된 정부에 통보하고, 이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도록 그 정부에 권유할 수 있다.

IL0헌장 제25조 : 이사회는 해당 정부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해명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이사회가 접수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정 및 진정에 대한 해명이 있을 때에는 그 해명을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

IL0헌장 제26조 :

1항 어느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이 두 나라에 의해 비준된 조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의 조항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에 이의를 권리를 가진다.

2항 이사회는 적절한 경우에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회부하기 전에 해당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항 이사회가 이의를 해당 정부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통보를 하여도 만족스러운 회답을 상당한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이의를 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항 이사회는 스스로의 발의와 총회 대표로부터의 이의 접수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5항 이사회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